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5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서범수·김소희·장동혁

이헌승 · 조경태 · 구자근

최수진 · 김위상 · 김은혜

윤영석·최보윤·김정재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 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 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검사 총괄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총괄 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4조).
 - 1)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별도의 지정검사기관을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검사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나.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 1)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부설기관(분사무소, 교 육원, 연구원 등) 설치 등을 규정함.

-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사용료 징수, 자료 제공 요청,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 다.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건설기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은 조사·점검결과 및 사고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35조).
 - 1)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건설현장 등을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함.
 - 2)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의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함.
 - 3) 사고조사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 원 근거 등을 마련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지정검사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검사 를 대행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 사대행자가"를 "지정검사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자 지정" 을 "지정검사기관 지정"으로, "검사대행자로"를 "지정검사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총괄기관"을 각각 "검사총괄기관"으 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총괄기관이"를 "검사총괄기관이"로, "총 괄기관 지정"을 "검사총괄기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대행자는"을 "지정검사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총괄기관"울 "검사 총괄기관"으로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제7항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신고 등의 수탁업무
 -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 3. 건설기계 사고조사 ·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 개발
 -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승인 받은 업무
 -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 2. 자산 운영 수익금
-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 또는 기부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 다.
-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 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다.
-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 제목 "(보고·검사 등)"을 "(보고·검사·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하게"를 "검사·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조사"로,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을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전문교육기관
- 8. 검사총괄기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하게 할수 있다
-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2. 한국교통안전공단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있다.
- ⑥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

한 것으로 본다.

-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 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 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 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 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 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② ----한국건설기계안전 원 및 지정검사기관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 ③ ----검사를 대행하는 자---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 ④ -----지정검사기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u>검사대행자</u> 또는 그 소속 기술 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

3의2. ~ 5. (생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생략)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정검사기관</u>
3의2. ~ 5. (현행과 같음)
5
<u>지정검사기관 지정</u>
지정검사기관으로
<u>.</u>
⑥ (현행과 같음)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 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

 계안전원

⑧ <u>총괄기관</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u>총괄기관</u>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총괄기관이</u>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u>총괄기관 지정</u>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u>총괄기관</u>은 검사업무의 확인· 점검을 위하여 <u>검사대행자</u>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u>검사대행자는</u>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⑧ 검사총괄기관
1. ~ 3. (현행과 같음)
9
검사총괄기관
⑩검사총괄기
관이
<u>검사</u>
<u>총괄기관 지정</u>
① 검사총괄기관
<u>지정검사기관</u>
<u>지정검사기관은</u>
② 제7항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

① 그 밖에 <u>총괄기관</u>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요한</u>	범위	에서	지	도 •	감독	. 및	업
<u>무수</u>	행에	필요	한	경비	비를	지원] 할
<u>수 있</u>	<u> </u>						

<u>13</u>	<u>검사총괄기관</u>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
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
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
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 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 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 등 의 수탁업무

-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 3. 건설기계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 보
-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 류 및 협력
-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 영,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업 무
-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승인 받은 업 무
-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 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 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달한다.

<신 설>

<u><신</u>설>

-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 2. 자산 운영 수익금
-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보조금· 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 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 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 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 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 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건설 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 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 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 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 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신 설>

<신 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 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 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 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35조<u>(보고·검사·조사 등)</u> ①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 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

- 1. ~ 6. (생략)
- <신 설>
- <신 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 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 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 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u>1. 총괄기관</u>
- 2. 한국교통안전공단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검사 • 조사하게	

- 1. ~ 6. (현행과 같음)
- 7. 전문교육기관
- 8. 검사총괄기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 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 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 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2. 한국교통안전공단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관</u>

- ③ 제1항에 따라 <u>검사</u> 또는 질문 <mark>③ -----</mark><u>검사·조사</u>-----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 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 고조사기관의 직원 -----
- 조사 ·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 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 른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건 설공사의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u>있</u>다.
 - ⑥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 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 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